

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개월
신청인	상호(또는 명칭)	전화번호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	
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	

원본증명업무의 종류 및 내용

원본증명업무 제공 대상 또는 지역

주요 장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

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식재산처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2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(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및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.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지정서 발급
신청인		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		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		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		